

나. 지적 재산권 관리 법령체계 및 특허권보호 법정관할권¹⁾

현재 우리의 정부 조직하에서는 지적재산권 정책의 수립·집행 전반을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는 없으며, 각각의 권리 내용에 따라 관장기관이 정해져 있다. 즉, 특허·의장·상표는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식물 종자법은 농림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통상산업부, 기술이전에 관한 경쟁 제한적 행위의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표 2-6-5> 지적재산권의 관장부서와 관계 법률

관장기관	분야	관계법률
특허청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통상산업부	영업비밀	부정 경쟁방지법
정보통신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률
문화체육부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농림부	저작권	저작권법
공정거래위원회	식물 종자	종자법
	경쟁 제한 행위	독점 규제법

자료원: 이공래외 다수,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연구총서 9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1998

이렇게 각 부처별로 관장사항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재산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집행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특허청은 1996년말 현재 본청과 3개의 소속기관(항고심판소, 심판소, 국제특허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760명이다. 특허청 발족이후 출원건수의 급증에 따른 심사·심판업무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력이 계속 충원되었다. 현재 총정원인 760명은 특허청 발족이후 274%의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산업재산권 출원증가율은 1,075%에 달해 아직도 심사 및 심판업무의 적체가 나타나고 있다.

(1) 심사처리기간이 길고 출원기술 보호가 어려워 기술혁신인센티브가 약화되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형태로 출원된 기술적 지식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 처리기간이 길어진다면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거나 즉시 생산에 이용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출원기술이 조기에 보호되지 않음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그 기술을 모방한 경쟁기업의 덤핑이나 시장잠식에 의해

1) 권용수·송위진, “제4장 제4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연구총서 9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1998.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표 2-6-6> 특허·실용신안 출원 상위국의 심사 처리기간(1995년)

국가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중국
처리기간	24개월	19개월	36개월	30개월	26개월

자료원: 특허청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와 실용신안의 평균 심사기간은 36개월로서 선진국인 미국·일본과 비교할 때 12개월에서 17개월정도 지체되고 있다. 또 WIPO의 권장 심사 처리기간인 24개월보다 12개월이나 길다.

그리고 1994년이후 계속 심사 처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6-2-7>참조).

<표 6-2-7> 심사 처리 기간

구 분		1994	1995	1996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수(건)		85,518	138,365	159,147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건수(건)		32,663	40,630	44,334
심사관(특허·실용신안 담당) 수(명)		189	192	262
1인당 처리건수(건)	특허·실용신안	320	350	343
(처리건수/정원수)				
처리기간(월)	특허·실용신안	35.5	36.4	37.0

자료원: 특허청 내부자료(1997)에서 정리

(2) 산업재산권 행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특허조사가 불완전하다.

또 다른 산업재산권 행정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기술범위는 국제 특허 분류 기준으로 299류로서, 미국의 33류, 일본의 63류, EPO의 70류에 비하면 너무 많다. 다루어야 할 기술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사관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 심사관중 5년이상 근속연수를 지닌 심사관이 24%에 불과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심사관이 부족하다.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출원된 기술의 특허성을 파악하는 데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때문에 권리 설정이 불확실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지게된다. 또한 산업계에서 획득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²⁾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출원하고 또 상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특허 정보와 기술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사전조사라고 하는 데, 특허 문헌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특허조사라고 한다. 이 조사 결과는 사전적으로는 기술기획에 활용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전조사의 방법은 특허공보 또는 그 초록을 기술분류별로 정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수단이지만, 특허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검색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산업기술정보원(KINITI),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KIPRIS)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기업체·특허법률사무소 등과 같은 민간 조직들이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6-8> 국내 특허·실용신안 제공 DB(1997년 3월 현재)

DB명	KIPRIS	TPI	PATROM	PIS	KINITI
시스템	KIPRIS,	하이텔,	CD-ROM,	천리안,	KINITI
제공	유니텔	나우누리	인터넷	나우누리	
갱신주기	1회/주	분기	1회/월	2회/주	분기
제공기관	특허기술정보센터	김영길 합동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대우전자 지적재산부	유니스 특허법률 사무소	산업기술 정보원

자료원: 김수천(1997).

(3) 지적재산권의 권리화가 해외출원보다는 국내특허 중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수집·정리되고 공표되는 정보들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의 효과적인 공급과 활용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술개발 활동이 체계화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정도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특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내국인 특허등록건수는 현재 세계 7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허권 획득경쟁이 치열한 해외에서 출원한 특허권 건수는 세계 18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측면에서는 상위권에 올라가 있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되는 수준은 세계 31위(IMD 평가)로서 기술의 권리화는 매우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행정제도는 각 부처별로 관장사항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심사 및 심판에 걸리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시간 지체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권리행사가 제약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국내기업들중 지적재산권 관련부서를 설치한 기업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관련 인력도 적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통해 창출되는 정보들을 기술전략 수립과 기술지식의 획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